

무배당하나거치연금보험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확 인 서

무배당하나거치연금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05년 6월 일

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선임계리사 윤 기 수

사 업 방 법 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무배당하나거치연금보험

1. 보험종목 및 명칭

구 분	연금지급형태	보험대상자 (피보험자) 범위
(무)하나거치연금보험 (거치형)	종신연금(10년보증, 20보증)형 [정액, 체증(5·10%)]	개인연금형, 부부연금형
	확정연금형 [7·10·15·20년형]	개인연금형
	상속연금형	개인연금형

2. 보험료 납입기간, 연금지급개시나이, 보험기간

보험료 납입기간	연금지급개시나이	보험기간
일시납	- 개인연금형 : 45 ~ 70 세형 - 부부연금형 : 48 ~ 70 세형	◎ 종신 - 제 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-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(단,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 까지)

단,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 후 3년 이후에 한함.

또한,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.

3. 가입나이

만 15세 ~ (연금지급개시나이-3)세

단, 70세 연금개시형은 만 15세 ~ (연금지급개시나이-4)세

4. 보험료 납입주기

일시납

5. 납입보험료 한도

기본보험료 : 100 만원 - 50 억원

추가납입보험료 : 기본보험료의 200% 이내로 함

6. 배당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.

7.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일시납보험료의 100%로 함.

8. 연금계약 순보험료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

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「공시이율」로 한다.

②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.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한다

③ 공시기준이율의 산출

-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.

공시기준이율 산출식 = (내부지표 + 외부지표) / 2

- 내부지표 산출식 =
$$\frac{2 \times (I - E)}{A_6 + A_0 - (I - E)} \times \frac{12}{6} \times 100$$

- I: 직전 6 개월간 투자 영업수익

- E: 직전 6 개월간 투자 영업비용

- A: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.

A₆: 산출시점 직전 6 개월초 현재 운용자산

A₀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- 외부지표 산출식 = (B1 + B2 + B3) / 3

- B1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 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B2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 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B3 :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가중이동평균이율 (B_i) =
$$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$

$B_i(-3)$: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$B_i(-2)$: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
$B_i(-1)$: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-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(AA-)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-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(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.)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. 단,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.
-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,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.
-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,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.
 -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.

④ ②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(②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)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

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.

⑥ 적립이율은 보험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 복리 2.5%, 10년 경과 후에는 연 복리 2.0%를 최저한도로 적용한다.

⑦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.

⑧ 3년미만 경과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보험료 납입경과기간	중도해지이율
1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60%, 2.5%)
2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70%, 2.5%)
3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80%, 2.5%)

9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10. 부가하는 특약

무배당정기특약, 무배당재해사망특약,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, 무배당입원특약Ⅲ, 무배당암보장특약Ⅱ, 무배당중신입원특약, 무배당중신사망보장특약, 무배당치매간병특약

11. 기타

가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,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5%로 한다. 단,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이 불가능하다. 또한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%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4 회에 한함.

나.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.

다.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.

라.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.

(별첨 제 1 호)

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